

5. 대상펀드

- 한화 LifePlus TDF 2040 증권 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□ 변경내역

- 종류 C-O(퇴직연금) 수익증권 명칭 변경 (변경후 : 종류 O(퇴직연금) 수익증권)

- 종류 O(퇴직연금)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 (28bp→21bp, 15bp→14bp)

구 분	현 행	변경후
제 3 조(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9. (생 략)</p> <p>20. <u>종류 C-O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	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<u>종류 O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9. (생 략)</p> <p>20. <u>종류 C-O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<u>종류 O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</p>
제 39 조(보수)	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[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<u>[종류 C-O(퇴직연금)]</u>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2</p>	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[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<u>[종류 O(퇴직연금)]</u>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2</p>

	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8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[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[종류 C-O(퇴직연금)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2.7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[2030년 1월 1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[종류 C-O(퇴직연금)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2.3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	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1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[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[종류 O(퇴직연금)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2.7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[2030년 1월 1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[종류 O(퇴직연금)]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2.3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4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
부 칙	<p><신 설>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(2022.10.14) (제39조 종류 O(퇴직연금)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 인하)</p>	